

상 품 : 제2011 - 105호
수 신 : 수신처 참조
참 조 : 상품기획 관련 담당 부서장
제 목 : 소규모펀드 공시 안내

2011.6.13

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당사에서 운용하는 소규모펀드의 수시 공시 대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-- 아래 --

1. 관련근거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(수시공시의 방법 등) 제3항
2. 적용 대상 (모두 해당되는 경우)
 - 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펀드
 - 나. 사모펀드가 아닌 펀드로서 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펀드
 - 다.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펀드
3. 대상펀드명 : 첨부 참조
4. 처리 방법 : 수시공시
5. 공시기준일 : 2011년 6월 12일(일)
6. 공 시 일 : 2011년 6월 13일(월)
7. 기타 : 해당 펀드중 투자신탁은 소규모펀드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(투자신탁의 해지)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음

첨 부 :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대상 목록 각 1부. 끝.

하나UBS자산운용(주)
대표이사 진재우



수신처 : 하나대투증권, 하나은행, 골든브릿지증권, 교보생명, 교보증권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대신증권, 대우증권, 메리츠증권, 산업은행, 삼성생명, 삼성증권, 삼성화재, 신영증권, 신한금융투자, 우리투자증권, 이트레이드증권, 키움증권, 한양증권, 현대증권, HMC투자증권, IBK투자증권